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

## 조례안

의안 번호	176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21. 5. 17.

제 출 자: 광진구청장

### 1. 제정 이유

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「지방일괄이양법」이 시행(2021. 1. 1.)됨에 따라,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에 관한 규정 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  -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,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, 제도변경 사항
- 다. 교육의 위탁,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 ~ 안 제5조)
  - 교육 위탁(수탁자)에 관한 사항 등 규정 마련
  - 교육대상, 교육참석, 교육내용, 교육시간 등 규정 마련
- 라. 교육실시 방법,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 ~ 안 제7조)
  -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·재해 시 교육방법 규정 마련
- 마. 교육통지서 배부, 교육의 유예 및 면제, 교육 실시 등의 보고, 교육 이수자 관리, 교육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 ~ 안 제12조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중앙행정기관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」(약칭 : 지방일괄이양법) 제13조
-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
-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## 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1. 4. 15.~ 5. 5.)결과 : 별도 의견없음
- 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첨부
- 3) 규제사전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5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6)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교육”이란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.
2. “노래연습장업”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.

**제3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)**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
2.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
3.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

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.

**제4조(교육의 위탁)**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5조(교육계획의 수립 등)**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
2. 교육일시 및 장소
3. 교육내용 및 방법
4.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

5.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
6. 교육비용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교육실시 방법)**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.

**제7조(교육강사)** ① 강사는 학계·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8조(교육통지서 배부)**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하려는 때에는 교

육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.

**제9조(교육의 유예 및 면제)**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
2. 본인의 질병·사고,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
3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
4.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
5.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,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

**제10조(교육실시 등의 보고)** 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1. 교육일시·장소
2. 교육내용
3. 예상 참석인원

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결과와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교육이수자 관리)** ①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·보관하고,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교육미이수자 조치)**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육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1항의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2021년 1월 1일 이후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부터 적용한다.

##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

교육 대상자	상호(법인명)	구청등록번호
	대표자성명	생년월일
	영업소 소재지	
교육일시	년 월 일 시	
교육장소		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담당자 전화번호 :

### 유의사항

#### 1. 교육생 준수사항

-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.
-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.

#### 2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직인

제 호

## 교육수료증

상호(법인명):

구청등록번호:

대표자 성명:

생년월일:

영업소 소재지:

교육일시: . . . : ~ : ( 시간)

위 노래연습장업자는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」  
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직인

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따른 교육교재 제작 및 강사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2항에 해당

제14조(비용추계서 작성)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 제작, 교육강사료 지급 등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- 2021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 예정

- 교육교재 제작비 : 총 2,000,000원(권당 5,000원×400부)

- 강사료 : 총 460,000원(시간당 230,000원×1명×2회)

※ 2021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 준용

### 4. 작성자

문화체육과 행정8급 박명진 (02-450-7694)

## 관계 법령

1	법규명	지방일괄이양법
<p>제13조(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를 “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로, “<u>대통령령이</u>”를 “<u>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조례로</u>”로 하고, <u>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</u>”을 각각 “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”으로 한다. <span style="color: red;">(이하 생략)</span></p>		

2	법규명	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[시행 2021. 1. 1.]
<p>제11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 ①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, 재난예방,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&lt;개정 2018. 2. 21., 2020. 2. 18.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</li> <li>2.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</li> <li>3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li> </ol> <p>②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u> &lt;개정 2018. 2. 21., 2020. 2. 18.&gt;</p>		

<b>2</b>	<b>법규명</b>	<b>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</b> [시행 2021. 1. 1.]
<p>제3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u>          &lt;개정 2008. 2. 29.&gt;</p> <p>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·도지사,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 &lt;개정 2008. 2. 29.&gt;</p> <p>제36조(과태료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&lt;개정 2018. 12. 24.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</u></li> <li>2.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</li> <li>2의2.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</li> <li>3.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</li> </ol> <p>②<u>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</u> &lt;개정 2020. 2. 18.&gt;</p>		

<b>3</b>	<b>법규명</b>	<b>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</b> [시행 2021. 1. 1.]
<p>제16조(권한의 위탁) 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③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</p>		

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  
**제1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[전문개정 2011. 3. 30.]**

<b>4</b>	<b>법규명</b>	<b>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b>
<p><b>제5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</b>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<u>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·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 &lt;개정 2019. 6. 4.&gt;</p> <p>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<u>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		

과장 【문화체육과】				담당팀장 【문화사업팀】				담당자			
성명	김기석	연락처	450-7570	성명	김홍효	연락처	450-7595	성명	박명진	연락처	450-7594